

제2567호
2018. 02. 28.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8- 15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
- 공 고
 제2018-14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3
 제2018-149호 : 2018년 중구 산태취부역 자정예산안내반송분 공사달 공고 6
 제2018-150호 : 2018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10
 제2018-158호 : 2018년 서울특별시 중구 공영무역 자원 및 육상에 관한 조례안 25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15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6	2018.02.28.	건물말소
2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9길 26-6	2018.02.28.	건물말소
3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1-5	2018.02.28.	건물말소
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3길 19	2018.02.28.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 2018-147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 모집 공고

우리 구는 우리 구 살림을 구민과 함께 꾸려 나가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에 참여할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동 협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시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18. 3. 2.(금) ~ 3. 16.(금)

2. 모집인원

-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50명 (연임 희망자 포함)
- 동 협의회 : 각 동별 12명 (연임 희망자 포함)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
- 공고일 현재 중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또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 ※ 공무원 및 구 산하시설 임직원과 세금장기체납자, 공직선거후보등록자, 휴·폐업상태인자, 범법자 등은 제외

4.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후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동 협의회 위원 신청은 각 동 주민센터로 접수)

- 우 편 : (우)04558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기획예산과
- 팩 스 : 중구청 기획예산과(02-3396-8659)
- 이메일 : agiwana@junggu.seoul.kr
- 방 문 : 중구청 4층 기획예산과 또는 중구 각 동 주민센터로 제출
 - ※ 신청서는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동주민센터 비치

5. 기타사항

- 선정자 발표 : 2018. 3. 30.(금) 선정자 개별통보

- 위원임기 : 2018. 4. 1. ~ 2020. 3. 31. (2년, 연임가능)
- 위원회 주요 기능 :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의견 수렴과 심의조정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기획예산과(☎02-3396-4915)로 문의바랍니다.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

【 동】 _____ NO. _____

신청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주민등록상)	※ 중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업자(직장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자 주소 기재			
	전화번호	▶ 자택 :	▶ 직장 :	▶ 이메일 :	
		▶ 휴대폰 :			
자기 소개	※ 근무경력, 특기사항, 신청동기 등 기재				
참여희망 분과위원회	① 교육문화관광 ② 재정경제 ③ 보건복지 ④ 도시환경 ⑤ 건설교통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참고	※ 분과위원회는 제1희망부터 제3희망까지 모두 기재(분과위원회별 인원 미달/초과시 참고) ※ 타지역 거주자로 직장소재지가 중구인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자는 신청 후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 확인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민을 대표하여 참여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동 협의회 포함)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참여예산 위원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공통)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직업, 자기소개서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장명, 직장주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18.4.1.~2020.3.31.(위촉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활용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구청, 동 주민센터, 세무서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거주여부 확인, 사업자등록 및 폐휴업 상태 확인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2018.4.1.~2020.3.31.(위촉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제3자 제공 동의를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2018.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 2018-149호

2018년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의 규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02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 2018년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3.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6-570(붙임1 참조)
4. 공고기간 : 2018. 2. 28. ~ 2018. 3. 14. (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지자체 게시판 및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 등
6.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중구 공원녹지과(☎02-3396-5862)

공고 대상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 신청서(붙임4)”를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원녹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팩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 02-3396-8800)

(붙임 1)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안내 반송분 필자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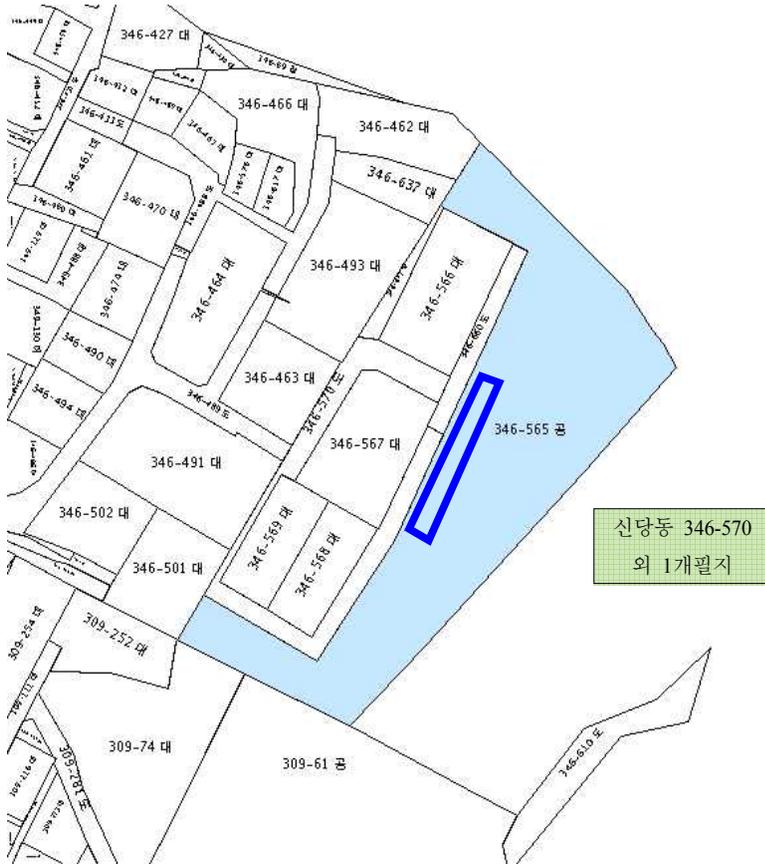
구분 (도면번호)	토 지 표 시							지정면적 (m ²)	소 유 자		비고
	시	구	법정동	행정동	지번	지목	지적(m ²)		성명	주소	
2018-1호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동	346-570	도로	748	123	성○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붙임 2)

서울특별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대상지 도면

번호: 제2018년-1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 대상지 도면



<보기>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용>

토지소재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시·구·동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예정 면적(m ²)	고시번호·일자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6-570	도로	748	123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6-660	도로	200	57	

(붙임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보호법」발췌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제45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2.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2.22]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사방사업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벌칙) 제45조의10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4)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이유				
지정 예정지	소재지			
	면적	m ²		
이의신청 면적				m ²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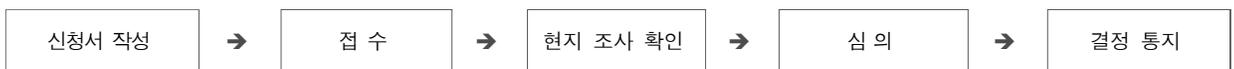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지역산사태예방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 2018-150호

2018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 ◆ 우리 구의 '18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574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233억원보다 659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210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1,382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82억원입니다.
- ◆ 우리 구의 '18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3.31%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1.09%입니다.
- ◆ 우리 구의 '18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억원의 적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재정은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평균수치보다 높은 편이나, 세수감소로 인한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재정공시란](#))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예산과 권상훈(02-3396-491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 입 예 산	4,574	4,259	315	5,233	4,661	572
	세 출 예 산	4,574	4,259	315	5,233	4,661	572
	중 기 지 방 재 정 계 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역 통 합 재 정 통 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63.31	62.36	0.95	36.13	37.05	-0.9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71.09	67.81	3.28	58.94	60.09	-1.15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7	-22	15	-40	-10	-30
재정운영계획	성 인 지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 민 참 여 예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과 계 획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운 용 상 황 개 요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 산 편 성 기 준 별 운 영 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평가결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교 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12개 단체(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성북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금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동작구, 서울 관악구)

- 유사단체 분류는 인구규모, 최근5년 인구증감률, 재정자립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규모 등을 고려함.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7,409	376,182	0	50,934	30,2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11,562	362,121	414,586	425,944	457,4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합 계	259,494	100	288,093	100	334,727	100	337,993	100	376,182	100
지방세	110,059	42.41	113,755	39.49	118,985	35.55	123,327	36.49	128,986	34.29
세외수입	54,620	21.05	55,159	19.15	72,162	21.56	74,063	21.91	71,840	19.10
지방교부세	2,673	1.03	2,750	0.95	2,786	0.83	2,968	0.88	4,010	1.07
중앙부금등	8,801	3.39	9,467	3.29	15,402	4.60	15,479	4.58	25,236	6.71
보조금	62,341	24.02	86,462	30.01	98,393	29.39	108,787	32.19	108,759	28.91
지방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000	8.09	20,500	7.12	27,000	8.07	13,370	3.96	37,352	9.9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7,409	376,182	0	50,934	30,29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311,562	362,121	414,586	425,944	457,4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합 계	259,495	100	288,093	100	334,727	100	337,993	100	376,182	100
일 반 공 공 행 정	22,597	8.71	20,584	7.14	23,890	7.14	21,290	6.30	23,340	6.20
공공질서 및 안전	2,178	0.84	2,089	0.73	2,131	0.64	2,157	0.64	2,265	0.60
교 육	5,028	1.94	4,624	1.60	4,990	1.49	6,435	1.90	6,884	1.83
문 화 및 관 광	13,087	5.04	13,171	4.57	15,997	4.78	15,005	4.44	17,351	4.61
환 경 보 호	14,180	5.46	15,018	5.21	27,434	8.20	24,132	7.14	25,964	6.90
사 회 복 지	80,731	31.11	96,043	33.34	104,320	31.17	104,420	30.89	119,300	31.71
보 건	5,678	2.19	6,541	2.27	6,720	2.01	7,147	2.11	7,459	1.98
농 립 해 양 수 산	165	0.06	181	0.06	232	0.07	439	0.13	200	0.05
산 업 · 중 소 기 업	4,105	1.58	2,436	0.85	2,403	0.72	4,950	1.46	2,186	0.58
수 송 및 교 통	5,308	2.05	7,344	2.55	8,804	2.63	5,275	1.56	9,419	2.50
국 토 및 지 역 개 발	5,469	2.11	12,315	4.27	30,414	9.09	29,385	8.69	30,261	8.04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3,413	1.32	4,353	1.51	2,817	0.84	9,485	2.81	17,836	4.74
기 타	97,556	37.59	103,392	35.89	104,574	31.24	107,873	31.92	113,717	30.23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451,968	487,019	35,050	7.76
서울특별시 중구	425,944	457,409	31,464	7.39
공사공단	16,664	20,698	4,034	24.21
출자출연기관	9,360	8,912	-448	-4.7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공사공단(1개) : 중구시설관리공단
- ▶ 출자출연기관(2개) : 중구문화재단, 중구장학재단

- ▶ 중구시설관리공단
 - 설립일 : 2007. 5. 3.
 - 조직현황 : 1실 5팀(혁신감사실, 경영지원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 주차사업팀, 시설안전팀)
 - 인력현황 : 총201명(정규직 81명, 계약직 120명)
 - 주요기능 : 체육문화시설 관리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관운영 등

- ▶ 중구문화재단
 - 설립일 : 2004. 9. 1.
 - 조직현황 : 1본부 6부(경영지원부, 공연기획부, 문화사업부, 콘텐츠개발부, 무대기술부, 시설관리부)
 - 인력현황 : 총51명
 - 주요기능 : 총무아트센터 운영·관리,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보급, 기타

- ▶ 중구장학재단
 - 설립일 : 2012.02.10
 - 조직현황 : 비상근 이사 8명, 감사 2명(무보수)
 - 인력현황 : 총 10명
 - 주요기능 : 중구 인재 발굴·양성과 지속적인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사업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63.3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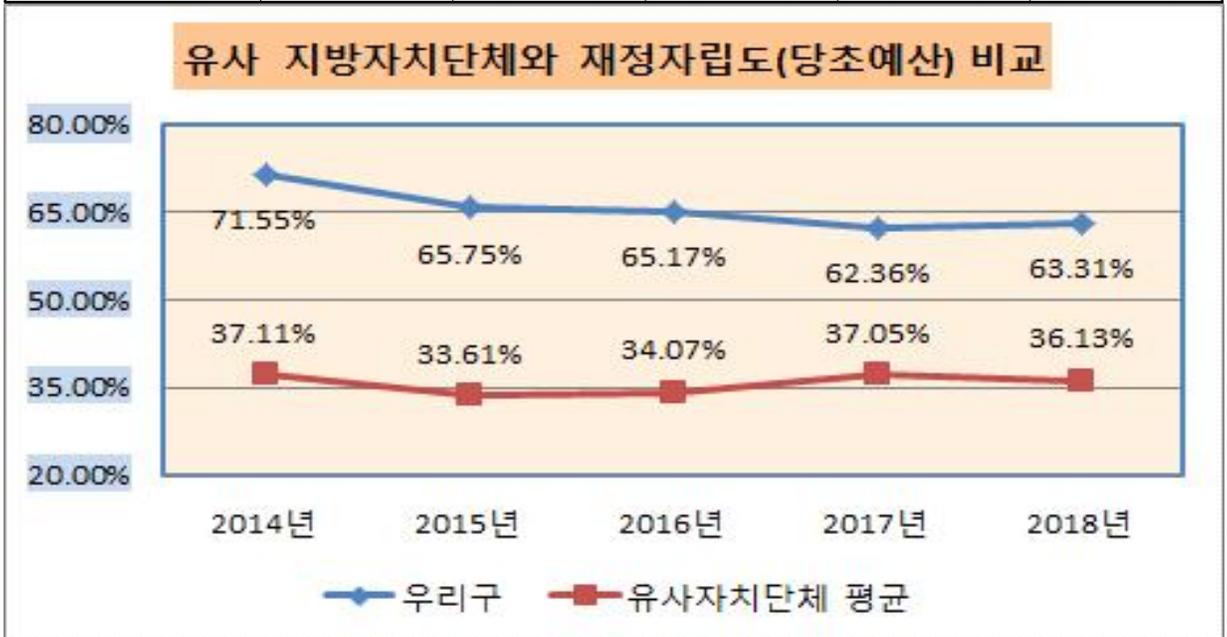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3.31 (53.39)	376,182 (376,182)	238,178 (200,826)	138,005 (138,005)	0	0 (37,352)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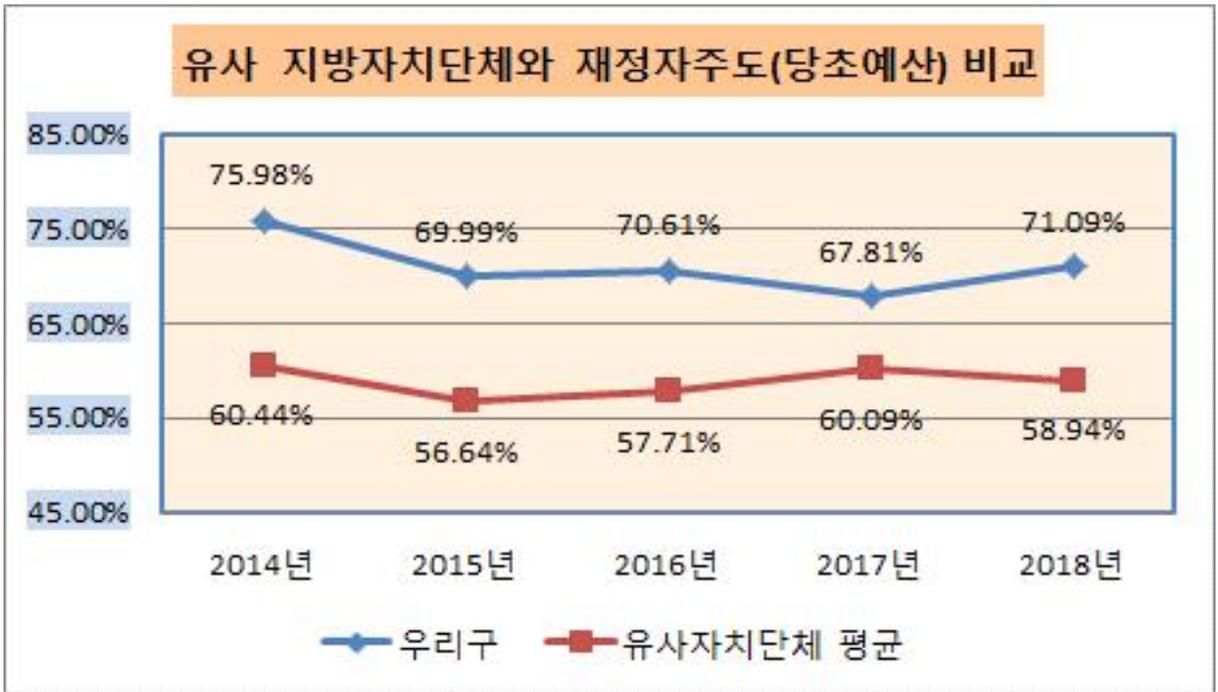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71.55	65.75 (58.63)	65.17 (57.11)	62.36 (58.40)	63.31 (53.39)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등 자체세입의 비중이 높아 유사자치단체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세목교환 등으로 인해 2015년 다소 하락한 이후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71.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자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1.09 (61.16)	376,182 (376,182)	267,424 (230,071)	108,759 (108,759)	0	0 (37,352)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제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자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75.98	69.99 (62.87)	70.61 (62.54)	67.81 (63.86)	71.09 (61.16)

☞ 우리 구는 자체세입의 높은 비율로 인해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재정자주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조사업을 위한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 구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규모 (G=B+E)	통합재정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용자회수 (C)	용자지출 (D)	순용자 (E=D-C)	순세계잉여금 (F)			
총 계	359,366	429,034	7,128	8,200	1,072	70,011	430,106	-70,739	-728
일반회계	338,830	374,945	0	0	0	37,352	374,945	-36,115	1,237
기타 특별회계	18,169	50,834	106	100	-6	32,659	50,828	-32,659	0
공기업 특별회계	0	0	0	0	0	0	0	0	0
기 금	2,368	3,255	7,022	8,100	1,078	0	4,333	-1,965	-1,965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34,787	-53,431	-59,833	-46,985	-70,739
통합재정수지 2	-1,615	-1,881	-1,664	-2,161	-728

☞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우리 구의 통합재정수지는 728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주로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용자지출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노력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기금 지출의 감소로 인해 적자수지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79,397	463,234	458,911	502,004	494,694	2,398,240	0.80
자 체 수 입	227,745	231,254	235,033	238,966	241,529	1,174,527	1.50
이 전 수 입	140,471	143,094	134,288	171,711	167,975	757,539	4.6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 부 거 래	111,182	88,886	89,590	91,327	85,190	466,175	-6.40
세 출	479,397	463,234	458,911	502,004	494,694	2,398,240	0.80
경 상 지 출	153,764	185,182	187,562	178,988	187,035	892,531	5.00
사 업 수 요	325,634	278,052	271,349	323,016	307,659	1,505,710	-1.4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 - 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구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0	15,451
여성정책추진사업	13	3,22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	1,704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	10,524

-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서울특별시 중구 예산현황](#))

●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참여예산위원회, 지역협의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457,409	320	1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위 원 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지 원 기 타 부 칙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20	
도로시설과	보행계단 설치(동호로8나길 32)	20	약수동
도로시설과	보행계단 재설치(다산로8길 16-16)	40	약수동
도로시설과	충정녹지대 인근 너덜너덜해진 도로포장 (중림동 196-1)	20	중림동
공원녹지과	방치된 자투리 녹지대를 주민동산으로 조성 (중림로8길 34)	35	중림동
건강도시과	마장로 가로등 편지	30	황학동
도로시설과	울퉁불퉁 도로 재포장 안전한 도로 조성 (서소문로 38)	30	중림동
도로시설과	도로노면 재시공(다산로8길)	20	약수동
도로시설과	노후 계단 정비 및 도로 포장사업 (퇴계로20길 19~15-5)	40	명 동
자치행정과	'남산옛길 세대공감 걷기여행'행사	5	회현동
공원녹지과	골목의 낭만, 선비의 감성을 느끼는 골목산책	40	회현동
도로시설과	노후 계단 정비 및 도로 포장사업 (퇴계로20길 15 ~ 퇴계로20가길 16)	40	명 동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안내)

4-4. 성과계획서

-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구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9	59	135	147	427,116	396,091	31,025
감사담당관	1	1	2	2	173	186	-12
공보실	1	1	2	2	798	854	-56
행정관리국	1	13	23	29	132,089	122,614	9,475
기획재정국	1	7	17	18	25,899	20,044	5,855
복지환경국	1	14	28	34	154,183	137,499	16,684
도시관리국	1	8	19	17	30,950	29,110	1,840
안전건설국	1	8	22	23	63,107	66,979	-3,872
보건소	1	6	20	20	16,875	15,966	909
구의회	1	1	2	2	3,042	2,840	202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현황](#))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63.31	71.09	31.71	25.66	43.79	42.51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현황](#))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A)	예산편성액(B)	차 액(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34	78	0
	부단체장		5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40	844	-79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	210	75	0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03	
	의원국외여비		32	
지방보조금		4,337	3,646	-691
통장·반장 활동보상금		-	891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3,293	-
공무원 일·숙직비		-	139	-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 통장·반장활동보상금
 - 통장 : 기본수당 월 200,000원,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20,000원(월2회)
 - 반장 : 연 50,000원
-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1인 1,800천원
-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 60,000원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 자치구는 공시항목에서 제외(특·광역시에 합산반영)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7년에 우리 구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7년에 우리 구에 증액된 지방교부세는 없습니다.

●서울특별시중구 공고 제 2018-158호

이 조례 및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글로벌 확대 추세인 공정무역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사업 추진의 기준이 없음
- 공정무역 사업의 근거기준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 ~ 안 제5조)
- 사업 추진계획, 지원범위, 사업비의 환수, 신청 및 접수 등(안 제6조 ~ 안 제9조)
- 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위원의 해촉, 수당(안 제10조 ~ 안 제14조)
-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안 제15조)
- 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위탁기간 등, 수탁기관의 의무,위탁계약의 취소 등, 기능(안 제16조 ~ 안 제20조)
- 공정무역제품 정보제공,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준용(안 제21조 ~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 (예관동), 문의전화 : 3396-5592, FAX : 3396-8693,

메일 : pej56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무역"이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단체와 개발도상국 생산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민·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신청 및 접수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서를 제출한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0조의 공정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이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정무역 지원단체의 선정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1명
2. 공정무역 업무소관 국장
3. 공정무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
4. 공정무역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소관 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을 때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규칙」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6조(공정무역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

울특별시 중구 공정무역센터(이하 “공정무역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정무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④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공정무역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할 수 없다.
- ⑤ 수탁기관은 위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센터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기능) 공정무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정무역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공정무역 사업 실행 지원
- 3. 공정무역 관련 연구조사·교육·홍보·전파
- 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공정무역제품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